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討報告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8호로 2022년 11월 10일 이성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안 제3조, 제4조)
- 다.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라. 지원 중단(안 제6조)
- 마. 표창 및 준용(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2. 11. 14. ~ 11. 1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¹⁾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보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 및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음.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에서는 “2022년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알림”(2022. 2. 14.)을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1)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위하여 소방서별로 관할 자치구와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은 아래와 같음.

순번	조례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6.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4.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8.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7.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7.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8.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6.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1.
10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11.

- 이에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 정립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업무 수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를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